

보도시점 2025. 2. 17.(월) 13:00 이후 (2024. 2. 18.(화) 조간)

#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 노·사·전문가 간담회 개최

-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차원의 의견 수렴 및 논의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월 17일(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연구회 위원, 노사단체, 학계 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각계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1부(경영계, 11시)와 2부(노동계, 13시)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 세부 참석 현황은 「붙임」 참조

연구회는 전·현직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발족했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기준 등 다양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향 마련을 모색해 왔다.

연구회 좌장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그간 심의 때마다,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보다는 노사 간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갈등이 반복되어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이며,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논의해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붙임 2. 최저임금 제도개선 주요 논의과제(안)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종환 (044-202-7526)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이승철 (044-202-7555) 김형준 (044-202-7535)

## 붙임 1 간담회 개요

### 1 1부: 경영계

- (일시) '25. 2. 17.(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 여의도 인근
- 참석자
  - (연구회) 박준식<sup>좌장</sup>, 권순원, 김기선, 전명숙, 전인
  - (정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장, 담당 사무관
  - (경영계) 류기정(경총 전무), 하상우(경총 경제조사본부장), 이명로(중기중 인력정책본부장)
  - (전문가) 박윤수(숙명여대), 윤자영(충남대), 조용만(건국대)
- 진행순서 ※ 회의 비공개

시간	진행내용	비고
5분	인사말씀	좌장
10분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향 설명	간사
40분	자유토론	
5분	마무리 말씀, 기념 촬영	좌장

## 2부: 노동계

- (일시) '25. 2. 17.(월) 오후 1시
- (장소) 서울 여의도 인근
- 참석자
  - (연구회) 박준식<sup>좌장</sup>, 권순원, 김기선, 전명숙, 전인
  - (정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장, 담당 사무관
  - (노동계)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문주(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이미선(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정희(민주노총 정책실장)
  - (전문가) 박윤수(숙명여대), 윤자영(충남대), 조용만(건국대)
- 진행순서 ※ 회의 비공개

시간	진행내용	비고
5분	인사말씀	좌장
10분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향 설명	간사
40분	자유토론	
5분	마무리 말씀, 기념 촬영	좌장

## **붙임 2** 최저임금 제도개선 주요 논의과제(안)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연구회 차원에서 마련한 자료로, 확정된 내용이 아님

### **1** 논의배경

-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가격을 정해 시장에 강행하는 제도로서 그 영향이 보편적이며 중요하므로,
  - 따라서, 노사간 교섭이 아닌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노동시장 및 경제 여건 등이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할 필요
-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면 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와 협의가 어려운 구조이며, 결정기준의 모호성도 지속 지적되어 있음
  - ☞ 심도있는 숙의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등 개편 필요

### **2** 주요 논의과제(안)

-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를 조정하고,
  - 이때, 위원회 구성은 ①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최저임금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②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유지
- 아울러, 노사의 극단적인 최초 요구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 검토
- 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통계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고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괄해 최저임금을 결정함이 바람직